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0.

발 의 자:민형배·김영배·정준호

김문수 • 이수진 • 문정복

이연희 · 김용민 · 홍기워

주철현 • 박균택 • 양부남

전진숙 • 정진욱 • 안도걸

조인철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광주·대전·대구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,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.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·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% 이상 늘었습니다. 처리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.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광주·대전·대구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이에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 · 대전 · 대구고등법원 권역 내에

위치할 경우,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합니다. 전라남・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, 충청남・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, 경상북도는 대구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3조 제12항 및 제13항, 제14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53호)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세종특별 자치시,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, 간이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, 간이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라남도,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, 간이회생 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2항부터 제3조제14항까지의
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, 간이회생사건,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재판관할) ① ~ ⑪ (생	제3조(재판관할) ① ~ ⑪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
	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세
	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또는
	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,
	간이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
	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
	에도 신청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
	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경
	<u>상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, 간</u>
	이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
	인회생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
	도 신청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
	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
	라남도, 전북특별자치도 또는
	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
	사건, 간이회생사건, 파산사건
	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
	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.